

의안 번호	24
----------	----

2026. 7.

창원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

창원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24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26. 7. 9.

제 출 자 : 창 원 시 장

1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이 조례는 농수산물직판장(마산회원구 내서읍)을 설치·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(2007년)되었으나, 직판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: 해당사항 없음.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.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.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(2026. 5. 29.~6. 18.): 의견 없음.

2) 현행 조례: 불입

창원시 조례 제 호

창원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창원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■ **창원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**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농수산물의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생산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인 창원시민에게 양질의 농·수·축산물 등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창원시 농수산물직판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) 창원시 농수산물직판장(이하 “직판장”이라 한다)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695, 754-3 번지에 둔다.

제3조(정의)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농수산물”이란 농산물·축산물 및 수산물과 임산물중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직판장”이란 농수산물의 수집·포장·가공·보관·수송·판매 및 농수산물의 물류 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.
3. “운영주체”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재산을 기부한 자로서 같은 법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.

제4조(기능) 직판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농수산물의 도매 및 소비자 직판기능
2. 농수산물의 집하·선별·포장·출하·저온저장 등
3. 농수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정보제공 및 상담기능
4. 그 밖에 직판장 설치 목적에서 정하는 사항

제5조(사용·수익허가) 창원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제3조제3호의 운영주체에게 우선하여 무상사용·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. 다만, 운영주체의 사정으로 허가권을 포기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유상사용·수익허가를 한다.

제6조(사용료) ① 직판장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는 운영주체의 투자금액 회수시점(손익분기점)부터 연간 매출액의 1천분의 5로 정하며, 무상사용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② 운영주체는 투자금액 회수시점(손익분기점)에 창원시가 고지하는 기간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7조(의무 및 책임) ① 운영주체는 직판장의 토지, 건물 등(이하“시설”이라 한다) 재산을 유지·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수익자 편익시설의 설치·개수·보수 및 유지관리, 제세공과금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.

② 운영주체는 직판장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,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그 밖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③ 운영주체는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환경, 위생처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환경 또는 위생사고 예방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8조(휴·폐업의 통보) 운영주체가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 7일전, 폐업 60일 전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9조(전대금지) 운영주체는 직판장 내 시설을 전대하여 수익을 얻게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다. 다만,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0조(시설변경의 금지) 운영주체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증축, 개·보수, 철거, 훼손, 망실 등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, 시장은 운영주체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.

제11조(시설의 반환)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시설을 반환하여야 한다.

1. 운영주체의 사용·수익허가 기간의 종료
2. 운영주체의 해산·폐업·허가의 취소
3.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을 경우

제12조(보고 및 검사) ① 운영주체는 매년 자체 회계결산 후 30일 이내에 결산서와 연간 사업실적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운영주체는 매년도 3월말까지 시설운영 및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14조제4항의 단서에 따른 경미한 수익성사업 및 직판장 시설의 유지보수 등의 운영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시장은 직판장의 건전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자로 하여금 운영주체에 대하여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·검사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3조(감독 등)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·확인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주체에게 이용방법 준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제14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과 「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등을 준용 한다.

제15조 삭제

<부칙 생략>